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996. 10. 4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9. 1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9. 23
- 라. 상정일자 : 1996. 10. 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방경태)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제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1994. 12. 22법률 제4795호)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골 자

- 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안 제1조).
- 나)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공석,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뤄지는 경우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주민 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 년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마) 재정운영상황중에서 확정되지않은 사업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재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의 규정이 신설('94. 12. 22)됨에 따라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에게 서산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 제5조의 주민공개의 제한 조문이 너무 포괄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겠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92 호
의결년월일	1996. . . (제 회)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9. 10.

서산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안 번호	92
----------	----

제출년월일 1996. 9. 10.

제출자 서산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제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안 제1조).
- 나. 주민 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주민에게 공개 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공석,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뤄 지는 경우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주민 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 년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
- 라.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의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마. 재정운영상황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 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7조).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시기) ①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 결산 승인 이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시장의 공석,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 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 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 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 운용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 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제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